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 포함, 장기재정전망 수시 실시 등〉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5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 포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2
2. 장기재정전망 수시 실시 및 지출관리계획 포함 (안 제7조제4항)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

다. 회 부 일 : 2024.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 포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u>목표</u> -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 -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 - 해당 회계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u>관리계획</u>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 해당 회계연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 해당 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u>목표(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속서류 - 해당 회계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u>관리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u>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임.

「국가재정법」 제7조1)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조세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 등이 포함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 중·장기

-
- 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 ④ ~ ⑪ (생략)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조세정책운용계획, 장기 재정전망 결과 등의 서류가 첨부됨.

개정안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더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명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의 재정총량 관리 목표²⁾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의 각종 재정혁신 방안³⁾을 서술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인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에서 전년도 계획에 대한 변동요인, 관리계획 평가·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되,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국방·치안·

2)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Delta 2.9\%$) 이후 단계적 감소, 국가채무는 20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안정적 관리

3) ①지출재구조화, ②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의 재정운용 효율화방안, ③R&D 투자시스템 개혁, 부담금 정비 등의 재정혁신 방향을 서술하고 있다고 밝힘

재난대비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기능은 강화하고,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기 재정운용 목표로 2028년 GDP 대비 △2%대 중반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GDP 대비 50% 수준의 국가채무 목표 등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5년부터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은 △2.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28년 GDP 대비 50.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목표 수준 및 전망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재정혁신 방향이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재정혁신 방향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쳐 각 세부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재정혁신방향 일부 발췌]

제5부 재정혁신 방향

1. 지출 재구조화

1) 지출 구조조정

(2) 추진방향

■ 재정사업 전반의 효과성 제고에 중점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관행적 사업은 줄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였다. 집행방식 개편,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 경비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정비, 평가결과 미흡사업 환류 등 낭비적 지출요인도 정비하였다.

■ 의무지출 부정수급 등 경직적 지출 누수관리

정부는 의무지출 부정수급 방지 등 경직적 지출 누수 관리도 강화하였다. 의무지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하는 한편,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 개편 등도 추진하였다. 또한, 수급자 추이 분석을 통한 실소요 반영 등 실제 필요한 지출소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경직적 지출 누수를 차단하였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또한, 정부는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의 경우 그 이행여부 및 정도가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수치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는 등 이행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

예를 들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계획했고,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통해 각종 재정위험을 식별·관리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도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이후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 추진’이라는 유사한 내용을 다시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평가는 없음.⁴⁾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관련 발췌]

○ 2023 ~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5부. 재정혁신방향’ 일부 발췌 5.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3)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2) 추진방향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통해 각종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 등 선행 재정지표 추이를 통해 향후 복지지출 부담,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부담 등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적자성 채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각적 재정위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2024 ~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IV. 관리계획 평가·분석’ 일부 발췌 ☐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재정준칙 법제화 이후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 추진 ○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 등의 선행 재정지표 관리를

4)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보고서(2024. 6.) 내용 참조. 다만, 해당 보고서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함.

-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등 보조적 지표를 통해 재정수지·국가채무만으로 파악
이 어려운 다각적 재정위험 관리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이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
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미흡한 상황
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재
정목표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
른 환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u>목표</u>	1. ----- <u>목표(세부 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한다)</u>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 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u>관 리계획</u>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 서	1. ----- ----- <u>관 리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생략)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2. 장기재정전망 수시 실시 및 지출관리계획 포함 (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 장기재정전망 실시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u>장기재정전망</u>을 실시함. <단서 신설>	○ 장기재정전망 실시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u>장기재정전망(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포함)</u>을 실시함.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장기재정전망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전망은 재정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장 최근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은 2020년 실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으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20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2025년에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⁵⁾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⁶⁾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연금·보험 관련 전망이 일반적으로 5년 주기⁷⁾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장기 재정전망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동으로 인해 전망의 전제가 되는 인구, 경상GDP 등 거시변수가 변화되거나 재정제도가 변경될 경우 기존 전망의 현실성이 낮아지게 됨. 따라서 적시에 전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상 실시주기는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장기 재정전망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또한 저하될 수 있음.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출생률 하락으로 인해 당시 가정한 인구 전망과 2023년 12월

5)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보도자료, 2024. 9. 8.

6)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경우 근거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전자의 경우 2060년 총인구를 4,284만명(중위) 또는 4,808만명(고위) 수준으로 가정한 반면 후자의 경우 4,230만명(중위), 4,740만명(고위), 3,742만명(저위)까지 추계하고 있음.⁸⁾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과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 비교]

(단위: 만 명)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2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현상유지, 성장대응 시나리오 (인구 중위)	5,178	5,193	5,086	4,774	4,284	-
	인구대응 시나리오 (인구 고위)	5,194	5,341	5,355	5,161	4,808	-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인구 중위	5,184	5,131	5,006	4,711	4,230	3,622
	인구 고위	-	5,215	5,244	5,095	4,740	3,282
	인구 저위	-	5,051	4,774	4,333	3,742	3,017

주: 1. 중위, 고위, 저위는 각각 중간, 높은,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의미함

2.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인구 저위를 가정하지 않음

자료: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예산정책처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장기재정전망인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과 비교해보더라도, 전자의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92.0%, 최소 47.1% 수준이나 후자의 경우 최대 161.0%, 최소 115.8%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요 전제의 차이 외에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이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전망에

8)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 6.

반영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⁹⁾¹⁰⁾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 비교]

구 분		주요 전제	2060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현상유지 시나리오	인구중위 거시경제지표 중립	전망	81.1%
			정책조합 병행	54.5~92.0%
	성장대응 시나리오	인구 중위 거시경제지표 적극	전망	64.5%
			정책조합 병행	47.1~72.5%
	인구대응 시나리오	인구 고위 거시경제지표 중립	전망	79.7%
			정책조합 병행	54.6~89.7%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1	인구 중위 재량지출이 장기 수렴 수준 (GDP 대비 12.8%)에서 유지	161.0%	
	시나리오 2	인구 중위 재량지출 일부 축소 (GDP 대비 11.7%)에서 유지	128.4%	
	시나리오 3	인구 중위 재량지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115.8%	

자료: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와 같이 장기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만 실시하는 상황에서 중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장기재정전망의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며, 해당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 발생시 장기재정전

9) 예를 들어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한 반면,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은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였고,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재정투입과 그로 인한 국가채무 확대까지 반영하였음.

10)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 6.

망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장기재정전망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출관리 계획으로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2021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2021년 예산안 기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재량지출 사업목록도 첨부하지 않아 실제로 무슨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의무지출의 경우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공적연금·노인·아동보육·고용노동·보훈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는데 각 분야별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¹¹⁾

11)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 6.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상 지출관리 계획]

- (지출관리)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 * '20년 2~3차 추경(총 47.3조원) 예산에 약 2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포함, '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의 10% 수준 지출 구조조정 반영
 -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
 -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
 - 인구·사회·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

국가재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어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재정전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체계는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첫째, 장기재정전망에 지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 시계에 맞추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립하더라도 의미있는 정보로서 부적합하여 장기재정전망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 있어서 현 시점의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의무지출 개혁 등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지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장기재정전망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둘째, 장기재정전망 수시 실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수시 전망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추계 주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재정전망과 사회보험 재정추계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망 주기에 대해 사회보험 주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함.

기획재정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 시계에 맞추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수긍되나, 기존에 제출한 장기재정전망상 지출관리계획을 살펴볼 때 재량지출의 경우 10% 수준의 구조조정, 의무지출의 경우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지출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재량지출 구조조정의 세부내역 및 의무지출의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장기재정전망과 사회보험 재정추계간 주기 정합성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의 재정추계가 장기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수시전망 실시에 관한 개정안 단서 조항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주관기관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④ ----- ----- 재정전망(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